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가합408762 주권인도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권대현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승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이진안
변 론 종 결 2021. 8. 19.
판 결 선 고 2021. 8.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피고 발행의 보통주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 20,000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신약연구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한다)상 벤처기업으로 등록된 회사이고, 원고는 C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로서 피고와 아래와 같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10.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부여일	행사 기간	부여 주식 수(주)	주당 행사 가격(원)	부여 주식 수×주당 행사가격(원)
2015. 10. 22.	2019. 10. 22. ~2024. 10. 21.	20,000	5,000	100,000,000

2)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계약서

본 계약은 회사경영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임·직원 및 실질적인 공로가 인정되는 대학교수, 연구원 등에 대한 보상과 회사가 달성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본 계약의 의미 있는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피고와 원고는 최선을 다한다.

제3조(스톡옵션의 행사 기간 및 조건)

(전략) 스톡옵션 행사일 현재 피고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스톡옵션의 행사방법 및 절차)

- ① 스톡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④ 스톡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원고는 그 대금(주식대금)을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고, 피고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주를 발행 원고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유상증자에 의한 신주교부 방법).

제7조(스톡옵션 부여의 취소)

피고는 다음의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스톡옵션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① 원고가 본 계약 이후에 원활한 업무협력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 ②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고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③ 피고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스톡옵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제8조(기타사항)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것은 피고 스톡옵션 운영규정, 관련 법령 및 증권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피고는 2017. 12. 28.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DDS¹⁾ 제제기술 연구 중단'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하기로 결의하고, 2018. 1. 18. 원고에게 '업무협력 및 DDS 제제기술 연구 중단'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계약 제7조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한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라. 원고의 확인서 작성 거부 및 피고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존재 확인 소송 예정 통지

원고는 2020. 3.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청

1) 약물전달시스템(Drug Delivery System)을 의미한다.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피고는 2020. 4. 3.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가 주식매수선택권 운영규정 및 제반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취소되어 이를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예정이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마. 관련 법령 등

관련 법령, 피고의 정관, 피고의 주식매수선택권 운영규정(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이라 한다) 중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벤처기업법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 ⑩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등)

- 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6항을 준용한다.

■ 상법 시행령

제30조(주식매수선택권)

- ⑥ 상장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해당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정관

제11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 ⑥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이 사건 운영규정

제8조(스톡옵션 부여의 취소)

회사는 다음의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해 스톡옵션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① 당해 임·직원이 사망, 정년퇴직, 임원으로서의 승진 이외의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②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 ③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스톡옵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④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외부 전문가가 스톡옵션 부여계약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기 전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ㄱ. 부여대상자가 경업관계에 있는 회사로 이직한 경우
 - ㄴ. 부여대상자가 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수행 중인 과업의 내용을 당사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한 경우
 - ㄷ. 부여대상자가 수행하기로 한 과업의 내용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여도가 없는 경우
 - ㄹ. 부여대상자가 스톡옵션 부여계약 이후 회사와 원활한 업무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ㅁ. 기타 부여대상자가 회사와의 계약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은 이 사건 소 제기일 무렵 행사 기간이 도래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위 계약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조건을 갖추었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피고 발행의 보통주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 20,000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긴밀한 협조에 관한 조건 성취 여부

(1)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계약 제3조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현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의 조건으로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0. 6. 24. 위와 같은 조건이 성취되어 원고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먼저 위 행사조건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협조란 힘을 보태어 돕는 것을 의미하는 불확정적인 개념이고,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협조를 할 구체적인 업무 및 협조를 위해 유지되어야 할 계약관계 등이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상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계약 전문에도 '본 계약의 의미 있는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피고와 원고는 최선을 다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② 원고는 피고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한 외부 전문가로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므로 원고의 협조란 피고의 자문이나 협조, 연구 요청 등에 응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외부 전문가로서 피고에서 요구하는 자문 내지 요청 등



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무렵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등으로 협조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는 한 긴밀한 협조에 관한 조건은 성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다음으로 원고가 위 조건을 성취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현재 긴밀한 협조에 관한 조건은 성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C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로서 피고의 요청에 따라 'D연구 결과'를 피고에 송부하여 피고가 'E 개발연구'를 수행하는 데 협력하였고, 2016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기술 선진화사업 지정과제' 공모 중 'F 개발' 과제에 피고가 참여하는 것을 수락하기도 하였다.

(나)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요청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협조를 요청한 사항을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권 교부의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에서 정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조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계약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은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행사 기간 내인 2020. 6. 24. 피고에 송달됨에 따라 행사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행사금액 1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피고 발행의 보통주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 20,000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계약 제7조 제1항, 이 사건 운영규정 제8조 제4항 등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업무협력이 중단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은 지능형 약물전달시스템 제제기술의 연구 및 기술 이전과 약물전달 플랫폼 개발을 목적으로 체결된 것인데, 원고는 피고에 이러한 기술을 이전하지 않는 등 원활한 업무협력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와의 업무협력이 중단되었음을 이유로 위 계약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적법하게 취소하였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효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는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계약 제8조에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것은 이 사건 운영규정, 관련 법령 및 증권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에 관하여 이 사건 운영규정 제8조 제4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계약 제7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사유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사유는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계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사유에 관하여 이 사건 운영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계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사유를 근거로 원고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운영규정 제8조 제4항의 '부여대상자가 수행하기로 한 과업의 내용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여도가 없는 경우'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할 수 없다.

2) 원고가 피고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한 외부 전문가이고,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상 협력관계의 근거가 되는 계약 등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의 업무협력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계약 제7조 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에서 지능형 약물전달시스템 제제기술의 미이전이나 약물전달 플랫폼 개발 무산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기술을 이전받지 못하였다거나 원고와 피고가 약물전달 플랫폼을 개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계약 제7조 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곽정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21-10-13

판사 서지원

판사 권가희